

영등포구의회  
제209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9. 14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영등포 스마트메디컬(Smart-Medical)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. 의료관광협의회 설치, 기능 및 회의, 구성,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9조)
- 라. 의료관광안내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(안 제10조~제11조)
- 마.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(안 제12조)
- 바.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기관,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(안 제14조)
- 사. 협력기관지정, 업무 위탁 등 규정(안 제15조~17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2019년 본예산 편성 예정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·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7.19.~8.8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과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와 위원회 구성, 위원의 제척,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·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국내외 홍보마케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민·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○ 검토결과,

본 제정 조례안은,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, 음식·숙박업, 관광·레저산업, 문화사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연관되어 있어서, 효율적인 결합 상품으로 개발할

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,

이를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관심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분야별 균형있는 육성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관광진흥법

**제12조의2(의료관광 활성화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(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, 치료,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·지원 관련 기관에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2 관광진흥법 시행령

**제8조의3(외국인 의료관광 지원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